

(서식 1)

식품진흥기금 용자신청서					
영 업 자		생 년 월 일			
업 소 명		전 화 번 호			
소 재 지		용자금의 용도		1. 영업장시설개선 2. 화장실시설개선 3. 운영자금	
신청금액	총사업비: 천원, 신청금액: 천원, 자부담: 천원				
업 종					
영 업 현 황					
식 품 접 객 업	업소규모	제공미터	식 품 제 조 업	업체규모	제공미터
	월평균매출액	천원		연간매출액	천원
	영업장소유	자가· 전세· 기타		영업장소유	자가· 전세· 기타
<p>「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제1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경기도 식품진흥기금의 용자를 신청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2023년 월 일 신청인 (서명 또는 인)</p> <p>경기도지사 귀하 시장·군수</p>					
구비서류	1. 사업계획서 1부. 2. 사업이행확약서 1부.				

사업이행확약서

「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」 제6조에 따라 영업장(화장실) 위생관리 시설개선자금 및 운영자금에 필요한 자금을 용자 받고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약속합니다.

1. 용자받은 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설개선기간 안에 시설개선을 하겠으며, 용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조기 상환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.
가. 식품접객업소 : 2개월 이내
나. 식품제조·가공업소 : 5개월 이내
2. 용자받은 후 본업소를 폐업·허가취소 또는 영업장의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용자금의 전액을 상환하겠습니다.
3. 영업자의 지위승계를 한 경우(다만, 수탁금융기관의 여신관리규정에 의하여 채무승계가 인정된 경우를 제외한다)에는 지체없이 용자금의 전액을 상환하겠습니다.
4. 대출당시 관할 시·군 이외의 지역으로 영업장을 이전하는 경우(다만, 식품제조·가공업소가 도내에서 영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)에는 귀청에 사전 신고 및 용자금의 전액을 지체없이 상환하겠습니다.
5. 모범음식점이나 위생등급업소 운영자금을 용자받은 후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전체 용자금중 2천만원을 제외하고 지체 없이 상환하겠습니다.
6. 용자받은 운영자금을 동산·부동산 취득 또는 증권·주식·정기적금·학자금 형태의 금융거래행위, 경마·카지노 등 도박행위, 경조사·여행비 등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없는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용자금의 전액을 지체없이 상환하겠습니다.
7. 영업장 시설개선 완료 후 20일 이내에 사업완료신고서를 귀청에 제출하겠습니다.
8. 사업수행상 제반사항에 대하여 귀청의 지시 및 지도에 적극 협조 하겠습니다.

상기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귀청의 어떠한 행정조치나 당해 금융기관의 여신관리규정에 의한 용자금의 회수(조기상환)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.

2023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경기도지사 귀하
시장·군수